

국회사무총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험명	선발예정인원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직 : 26명(일반 23명, 장애 3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시 형 과 목
필기시험	1교시(85분) : 국어·헌법·경제학 2교시(85분) : 영어·행정법·행정학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170분)]
면접시험	추 후 공 고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1. 2. 15.(월) 09:30 ~ 2021. 2. 19.(금) 17:00	필기시험	4. 16.(금)	4. 24.(토)	5. 21.(금)
	면접시험	5. 21.(금)	6. 8.(화) ~ 6. 9.(수)	6. 11.(금)

※ 응시원서 결제취소 마감일은 2. 22.(월) 21:00입니다.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결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안내” 참조)
연 령	◦ 18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 · 경력	◦ 제한 없음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9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 15. ~ 2. 19.) 중
 - 2. 15.(월) : 09:30 ~ 24:00
 - 2. 16.(화) ~ 2. 18.(목) : 00:00 ~ 24:00
 - 2. 19.(금) : 00:00 ~ 17:00(원서접수 마감일)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 15.(월) ~ 2. 22.(월)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2. 22.)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저소득층 해당자를 제외한 응시생의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21. 3. 29.(월) ~ 6. 11.(금)까지입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가. 적용대상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아래 편의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항목	제출서류	비고
시각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기존 6급 중 좋은 눈 교정시력 0.3 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5급 2호, 6급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항목	제출서류	비고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대필(선택형 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대필(선택형 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1~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원본 1부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높낮이 조절 책상	의사소견서(임신사실확인 서) 원본 1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 바랍니다(의사진단서(소견서)에 해당 장애 유형과 정도 기재).
-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며, 신청 결과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17. 3. 28. 시행)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다.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신청서	◦ 별첨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단,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허용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 ◦ 발급일자 : 2019. 2. 20.부터 인정(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의사진단서(소견서) 내용(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아래 예시 참고) ① 해당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값 명기 ② 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th></tr> </thead> <tbody> <tr> <td>시각장애</td><td>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td></tr> <tr> <td>뇌병변</td><td>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td></tr> <tr> <td>임신부</td><td> 상기인은 ①임신 30주,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td></tr> </tbody> </table>	구분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	시각장애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①임신 30주,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구분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								
시각장애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①임신 30주,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 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기타 ① 의사진단서(소견서)가 필요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라. 증빙서류 제출절차

▶ 제출기한 : 2. 19.(금)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작성한 신청서(별첨서식) 및 제출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0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 면접시험 관련 세부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고
①	택1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①, ②는 각각 중복 적용 가능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	
②	전문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 5% / 3%)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의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의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 확인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5% 또는 3%) 확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다. 전문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전문자격증 소지자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21. 4. 23.)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 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으로 연락주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1:1 질의응답]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 장애유형

- 시각 장애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뇌병변 장애 : ☐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지체 장애 : ☐ 상지지체(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상지지체(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하지지체
- 청각 장애 : ☐ 청각 장애
- 기 타 : ☐ (사유를 자세히 기재)

■ 신청사유 :

※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항목 :
(장애 유형 별
편의지원 항목
내에서 복수신청 가능)

- | | |
|--|--|
| ☐ 확대문제지(118%, 14 point) | ☐ 노트북 제공(논문형 시험) |
| ☐ 확대답안지(B4규격 표기형) | ☐ 대필(선택형 시험) |
| ☐ 음성지원 컴퓨터(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자) | ☐ 별도 시험실(좌석간격 조정) |
| ☐ 축소문제지(82%, 10 point, 확대독서기 지참자) | ☐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
|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확대문제지(150%, 18 point) |
| ☐ 점자문제지 | ☐ 확대답안지(A3규격 표기형) |
| ☐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 ☐ 높낮이 조절 책상 |
| ☐ 시험 중 화장실 사용(※임신부 등 편의지원 항목 해당자) | |

■ 인적사항 :

성명		연 락 처	집	
주민등록번호			휴대 폰	
			E-mail	

본인은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기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편의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회사무처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신청자 : (인)

국회사무총장 귀하